

문서번호 대의협 제0643 - 14890호

시행일자 2022. 3. 14.

수 신 수신처 참조

참 조

제 목 요양병원, 요양시설 및 정신건강증진시설 추가접종(4차) 위탁의료기관 접종 가능 안내(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)

1. 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관련근거 :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-6217(2022.3.11.)

3.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서는 요양병원, 요양시설 및 정신건강증진시설 추가접종(4차) 관련하여 자체접종 및 방문접종 등 외에 위탁의료기관 접종이 가능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온 바, 귀회 소속회원들에게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4. 아울러, 「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」에 코로나19 감염 과거력이 있는 대상자는 2회 접종 완료 후 추가접종(3차·4차)은 권고하지 않고 있으니, 이를 함께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다음 -

가. 대상 : 종사자 및 거동가능한 시설 입소자

나. 추가접종(4차접종) 방법

대상자 구분	자체접종 및 방문접종 등	위탁의료기관 접종
요양병원 및 정신의료기관 종사자	소속기관 자체접종	개인별 사전예약을 통한 대국민 예약 기반 접종
요양시설·정신요양시설·정신재활시설 종사자 및 입소자	방문접종 또는 보건소 내소접종	

[위탁의료기관 접종 방법 안내]

- 자체접종 및 방문접종 등이 어려운 종사자 및 거동 가능한 시설 입소자는 개인별로 사전 예약누리집(ncvr.kdca.go.kr)을 통한 대국민 예약 후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 가능
※ 잔여백신(SNS 잔여백신 예약 또는 의료기관 유선확인) 당일접종 가능

- 사전예약누리집을 통해 예약이 안되는 종사자는 대상자 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이므로 보건소를 통한 대상자 등록 후 예약 가능
- ▶ 소속기관 접종관리 담당자가 관할보건소로 대상자등록 요청시에는 엑셀 명단 (성명, 주민등록번호, 소속기관명) 제출으로만 대상자 등록 가능
- ▶ 종사자 본인이 직접 대상자 등록시에는 재직증명서를 보건소로 제출하여 대상자 등록 가능

다. 위탁의료기관 접종 시행일자 : 2022. 3. 14.(월)부터

※ 붙임 :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공문 1부. 끝.

대한의사협회장

“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”



수신처 : 각시도의사회장, 대한의학회장(26개 전문과목학회), 대한개원의협의회장(각과개원의협의회장),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, 대한전공의협의회장,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, 한국여자의사회장